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타 기관에서 해지를 하고 본 기관으로 등록 시 계약한 기간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1. 지역사회에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 시켜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1. 기관의 의무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로 하며, 서비스 시간은 주5일 매일 06: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와 종사자 간 협의하여 토요일도 근무 할 수 있다.
2.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서비스 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는 공단부담금,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로 감액하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 또는 보호자, 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를 가진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할 의무를 가진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제공 할 의무를 가진다.
2. 대상자, 보호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③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대상자 및 보호자는 요양 서비스 전 본인(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기준 대상자는 제3장(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 및 해제)

1. 대상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2.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대상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③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4.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용계약서 또는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경우
- ③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④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5.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대상자의 종결은 대상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대상자가 계약을 해지 할 시 기관에 30일전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